『구민과 소통하는, 희망광진!』

광 진 구

수신자 광진구의회의장
(경유)
제 목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안 구의회 제출

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의안건으로 제출합니다.

가. 부의안건

연번	주관부서	안 건 명	비 고
1	복지정책과	서울특별시 광진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	제 정
2	복지정책과	서울특별시 광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일 부 개 정
3	사회복지과	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일 부 개 정
4	사회복지과	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일 부 개 정
5	청 소 과	서울특별시 광진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	일 부 개 정

붙임 조례안 5부. 끝.

광진구청장

★주무관 조은상 의회법무팀장 신수일 기획예산과장 정광희 기획경제국장 11/10 代정광희

협조자

시행 기획예산과-101932 ( ) 접수 ( )

우 05026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/ http://www.gwangjin.go.kr/
전화 /전송 02-3425-1719 / / 대시민공개